
『2단계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 입찰 관련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3차)

2013. 10. 4

한국가스공사

※ 본 답변은 대보건설(주)[9.30, 10.1], 삼환기업(주), 경남기업(주), 금호산업(주), 대림산업(주), (주)한화건설, (주)한양, 현대건설(주)의 질의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적정성심사 관련 : 관로건설공무팀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해당공사
1	Q.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바-1)-아)의 '조사금액이 0원인 비목에 산출내역서 비목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 적용 범위는?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바-1)-아)는 ' <u>정당한 사유 없이(사유서 제출 없이)</u> 조사금액이 0원인 비목에 0보다 큰 금액을 비목에 반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	Q. 자재평가 받는 세부공종과 A, F 받는 세부공종(기준을에 따는 자동평가)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일반자재 적용받는 세부공종 모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3-바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3	Q. 공종내 일반자재 평가와 기타 평가 받는 세부공종이 혼합되어 있다면 일반자재/기타평가/절감사유서제출 각각 해당 세부공종 모두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이때 일반자재 평가를 받는 세부공종별 사유서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에 여러 세부공종을 합쳐서 제출해도 무방한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마-1)-가)에 따라 자재가격 평가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4	Q. 동일세부공종 판정시 토목-건축간에도 해당되는지? 또한, 오타에 의한 품명 상이시 동일세부공종인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1차)'의 1번에 따라 품명, 규격, 단위 및 비목별(재/노/경) 단가가 모두 동일할(띄어쓰기 및 대/소문자 구분 제외) 경우 동일세부공종으로 판단하므로, 토목공사-건축공사간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타에 의해 품명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동일세부공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5	Q. 총괄표의 경비항목중 산식에 노무비(직노+간노)가 들어가는 항목은 3/1000적용시 3/1000을 반영한 간접노무비를 적용하여 총괄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A. 간접노무비 산정시 3/1000이 적용되었다면 3/1000이 반영된 금액으로 총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해당공사
6	Q. 전자 입찰시 공종별 사유서 제출에 있어 공종별로 분리하여 사유서를 파일로 제출해도 되는지? 또한, 전자입찰로 사유서를 제출할 때 사유서만 제출하는지 또는 사유서와 단가산출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A. 전자 입찰시 공종별 사유서는 한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로 사유서 제출시에는 사유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7	Q. CD제출시 각 공구별 별도 밀봉날인 하는지? 출력제본시 제본형식은 바인더 또는 기타형식으로도 가능한지? 위임장 재직증명서 제출은 한부만 하면 되는지? 제출시 1부 제출하면 되는지?	A. CD는 업체별로 1EA만 제출(단, CD 케이스 표지에 해당 공사명을 기입, 대표사만 날인)하여 주시고, 출력제본은 공사별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모든 자료는 공구별 구분 없이 1개 박스에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1부만 제출하셔도 상관없으나, 위임장에 해당 공사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8	Q. 재/노/경으로 구성된 세부공종에 대해 재료비만을 절감하여 사유서를 작성한 경우, '절감시 공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있어 6점[보통(3점) & 보통(3점)]을 받을 수 있는지?	A.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등의 평가시 단순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재료비만을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노무비나 경비가 재료비의 손료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에서 0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9	Q. 일위대가의 구성비목이 재/노/경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공종이 경비항목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일반자재로 평가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가-5)-나) 항에 따라 30공종 분할내역서의 세부공종이 경비로만 구성된 경우는 일반자재로 평가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0	Q.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된 항목의 경우에 일위대가가 없는 경우는 일반자재로 평가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가-3)-나) 항에 따라 경비항목이 일위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비목을 일반자재로 적용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해당공사
11	Q. 장비제조사의 카탈로그 등의 장비의 속도, 작업량 등을 인용한 경우 장비대체로 평가가 가능한지? 동일한 장비임에도 카탈로그 적용에 따라 특정장비로 평가시 장비 가격 적용은 당초 설계장비 가격을 반영하는지? 또한 인터넷이나 견적서도 공표가격으로 인정되는지?	A. 표준품셈상의 값을 수정·보정하는 것은 불인정하나,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적용한 장비의 경우 특정장비는 <u>표준품셈에 없는 장비 규격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u>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에 의한 절감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특정장비 가격은 장비제조사 및 공급자가 공표한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가격 확인은 인터넷검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견적서는 인정하지 않음).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2	Q. 산출내역서(통합본)에 적용된 산식을 주계약자(종합건설업종) 및 부계약자(전문건설업종)의 간접비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일부 차액이 발생될 시 처리 방법은?	A. 간접비 산정시 일부 차액이 발생될 경우, 부계약자(전문업종) 간접비에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전문업종 1 또는 전문업종 2). 만약, 부가가치세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10%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간접비 항목에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4개 공사 (입찰공고 1.1 ①,②,③,④)
13	Q. 산출내역서(통합본)에 적용된 산식을 주계약자(종합건설업종) 및 부계약자(전문건설업종)의 간접비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정확한 의미는?	A. 산출내역서(통합본)에 적용된 산식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종)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종)의 간접비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우는 당공사와 동일하게 430만원을 주계약자에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4개 공사 (입찰공고 1.1 ①,②,③,④)
14	Q. 사칙연산, 품의 적용오류 등의 사유도 조사금액 오류에 의한 절감사유로 인정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가-5-다)에 따라 소요자재의 가격 평가에 국한하여 평가하며, 인정사유는 당공사 적정성심사 기준 [별표 3-3]의 3-3-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해당공사
15	Q. 물가지 또는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를 적용하였을 때 조사금액 적용 오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A. 당공사 적정성심사기준 [별표 3-3]의 3-3-2에 따라 평가하나, 당공사가 설계서 작성시 물가지 또는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일 경우에는 조사금액 적용 오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6	Q. 레미콘이나 골재 등 지역에 따라 단가가 차이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지역 자재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자재 가격을 적용 하였을 경우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A. 적용지역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7	Q. 시내도착도인 자재에 대해서 채취장 상차도에 표준품셈에 의한 운반비를 계상하여 사유서를 작성시 조사금액 적용 오류대상인지?	A. 조사금액 적용 오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8	Q. 노무비로만 구성된 세부공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장비를 투입하여 절감(또는 시장시공가격 적용) 하였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나2)항에 따라 세부공종이 '노무비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평가시, 사유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금액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평가합니다.('시중노임단가 미만' 아님)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9	Q. 당 입찰에서는 관련규정 오류에 관한 사유서 평가를 시행하는지? 또한, 관련규정 오류를 인정한다면 관련규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 이번 입찰에서는 관련규정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0	Q. 자재가격 평가를 받는 세부공종에 대한 별도 제출 자료는 모두 필요없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마1)-가)에 따라 자재가격 평가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 3-바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찰금액 사유서에 '사유 없음'으로 명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 설계내역서 관련 : 관로건설토건2팀 및 관로건설기계팀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공구
1	Q.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토목공사 1848번행부터 1865번행까지는 경비에만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나, 분할본에는 재/노/경에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데 작성기준은?	A.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과 30공종 분할내역서(분할본)의 비목별 단가 반영에 차이가 있다면,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기준으로 작성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입찰공고 1.1 ②
2	Q. 「태백~정선, 속초~고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건설공사」 기계공사 설계내역 『70-1. 야적장 가설비 → 전선관 부속품비(전선관재료비의 15%), 잡품 및 소모재료비(전선+전선관재료비의2%)』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는데 작성방법은?	A. 당공사는 설계시 손료로 적용하였으므로 당공사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입찰공고 1.1 ③
3	Q. 압입추진공(보통암, 경암) 설계단가 산출 작성시 표준품셈 적용이 잘못된 부분(할증)에 대하여 과다하게 적용된 품셈을 수정하여 사유서를 작성이 가능한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나-11)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로스율 및 할증을 등을 임의로 하향 조정한 경우'는 부적합 처리하며, 조사금액 적용 오류는 소요자재의 가격 평가에 국한하여 평가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4	Q. 압입추진공(보통암, 경암) 작업량 산정시 표준품셈 3-1-3 2.기계사용터파기(암반)의 착암공 품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는데 이를 사유서 작성시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2013.09.30)』 1.1번 절감사유서별 평가시 표준품셈상의 값을 수정.보정은 불인정 항목에 포함되는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품셈에서 1일 작업량이 명기된 경우는 값을 수정·보정하는 것은 불인정하며, 압입추진 작업량 산정시 토질조건에 반영된 암질별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공구
5	Q. 모래채움 및 다짐(인력) 내역 중 '채움 및 다짐(보통인부 0.15인/m³)'은 표준품셈에 없는데 기계시공비율 확대로 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A. 질의사항은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계시공비율을 확대하여 절감사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6	Q. 순성토운반(토취장)에서 휠로우더(1.72m³)을 백호우(1.0m³)로 변경 가능한지? 또한, 현장여건에 맞게 운반속도 변경이 가능한지?	A. 질의사항은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를 대체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7	Q. 순성토운반(토취장)에서 운반속도를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한지?	A. 질의사항은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변경 가능하나,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가-1)-다)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골재원 및 경로는 없으므로 토취장을 조사하여 선정하는 등의 운반경로가 반영되어야 하며, 사유서로 채택되었을시 관련법에 의거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8	Q. 기계공사의 세부공종인 '강관부설'은 표준품셈상의 값을 중량에 따라 비례식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였는데, 시공경험치를 반영하여 노무비 공량 절감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A. '강관부설' 세부공종은 당공사에서 표준품셈의 값을 단순 비례식으로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써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절감사유서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계	6개 공사 (입찰공고 1.1)
9	Q. 토목공사 세부공종인 기계경비(경암이상)의 일위대가에 굴착시간이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A. 토목공사 세부공종인 기계경비(경암이상)의 일위대가 중 손료(경암이상 : 추진설비)의 일진량이 잘못 반영되었으나, 적정성 평가시에는 당공사의 조사금액(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0	Q. '가설비' 세부공종의 경우, 종합건설용의 단가와 전문건설용의 단가가 상이한데 단가 산출 방식 및 일부 차액 보정 방법은?	A. 종합건설용의 단가와 전문건설용의 단가가 상이할 경우, 단가 산출은 당공사가 적용한 비율 방식 등을 그대로 적용하고, 일부 차액이 발생할 경우는 부계약자(전문업종)에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4개 공사 (입찰공고 1.1 ①,②,③,④)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공구																												
11	Q. 「태백~정선, 속초~고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 기계공사 통합본 8116번행~8118번행 및 8120번행~8122번행까지 비목별 합계단가가 잘못 기입되어 있는데?	<p>A. 「태백~정선, 속초~고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 기계공사 통합본의 합계단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노무비단가 (변경없음)</th> <th>합계단가 (수정단가)</th> <th>합계금액 (변경없음)</th> </tr> </thead> <tbody> <tr> <td>8116번행</td> <td>69,682</td> <td>69,682</td> <td>69,682</td> </tr> <tr> <td>8117번행</td> <td>16,985</td> <td>16,985</td> <td>16,985</td> </tr> <tr> <td>8118번행</td> <td>13,065</td> <td>13,065</td> <td>13,065</td> </tr> <tr> <td>8120번행</td> <td>69,682</td> <td>69,682</td> <td>69,682</td> </tr> <tr> <td>8121번행</td> <td>16,985</td> <td>16,985</td> <td>16,985</td> </tr> <tr> <td>8122번행</td> <td>13,065</td> <td>13,065</td> <td>13,065</td> </tr> </tbody> </table>	구분	노무비단가 (변경없음)	합계단가 (수정단가)	합계금액 (변경없음)	8116번행	69,682	69,682	69,682	8117번행	16,985	16,985	16,985	8118번행	13,065	13,065	13,065	8120번행	69,682	69,682	69,682	8121번행	16,985	16,985	16,985	8122번행	13,065	13,065	13,065	기계	입찰공고 1.1 ③
구분	노무비단가 (변경없음)	합계단가 (수정단가)	합계금액 (변경없음)																													
8116번행	69,682	69,682	69,682																													
8117번행	16,985	16,985	16,985																													
8118번행	13,065	13,065	13,065																													
8120번행	69,682	69,682	69,682																													
8121번행	16,985	16,985	16,985																													
8122번행	13,065	13,065	13,065																													
12	Q. 「태백~정선, 속초~고성 및 강릉~평창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 기계공사 통합본의 야적장 가설비(21공종, 25공종, 29공종)에 단가가 없는데?	A. 입찰시 야적장 가설비 세부공종의 합계단가에 단가를 기입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계	입찰공고 1.1 ③																												
13	Q. 당초 단가산출시 적용된 토질정수 N치 등을 현장분석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나-1)에 따라 작업계수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한 경우는 부적합 처리합니다.	토목/건축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4	Q.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이 품셈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 현장여건을 분석하여 품셈에서 적용된 K, E, CM 값 등을 변경하여 절감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나-1)에 따라 작업계수를 증빙자료 없이 변경한 경우는 부적합 처리합니다.	토목/건축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5	Q. 압입추진의 경우 품셈에 1일 작업량이 명기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단가가 산출되었는데, 현장 여건분석, 장비조합 변경 등의 사유로 절감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품셈에서 1일 작업량이 명기된 경우는 값을 수정·보정하는 것은 불인정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 의 사 항	답 변 내 용	구분	공구
16	Q. 세부공종이나 일위대가가 실적공사비(타기관)과 동일한 구성일 경우 절감사유로 적용 가능한지?	A. 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적산기준은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가야)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공사비(타기관)는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건축 /기계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7	Q.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만 인정' 부분 내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세부공종의 노무비 품을 표준품셈의 기준을 근거로 작성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경험에 의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 /기계	6개 공사 (입찰공고 1.1)
18	Q. 「해남~장흥 주배관 및 함평관리소 건설공사」 물량내역서의 토목공사에도 일부가 도암 B/V로 되어있는데?	A. 건축공사 및 기계공사와 동일하게 도암B/V를 영과 B/V로 수정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입찰공고 1.1 ④
19	Q.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분할본) 토목(전문건설용1)에 수량이 0으로 된 경우 단가를 기입해야 하는지?	A.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분할본) 토목(전문건설용1)에 수량이 '0'으로 되어있고 30공종 공종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단가와 금액을 기입하지 마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입찰공고 1.1 ①
20	Q.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건축공사에서 주요자재 공종으로 구분된 것 외에도 비고란에 주요자재로 명기된 것은 주요자재 평가인지?	A. 당공사가 배부한 현장설명서 II-2-다(건축공사) 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입찰공고 1.1 ①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공구						
21	Q.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의 일위대가 호표 155번에서 단가와 수량의 곱이 금액과 서로 상이한데,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A. 「승주~고흥 및 곡성~구례 주배관 건설공사」의 호표 155번의 단가(재료비/노무비)는 [단가×수량×호표에 명시된 적용비율]로 구성된 것입니다.	토목/건축	입찰공고 1.1 ①						
22	Q.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분할본) 건축공사의 782번행과 2546번행의 노무비 단가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데?	A.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 건축공사 분할본의 노무비 단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구분</th> <th>노무비단가</th> </tr> </thead> <tbody> <tr> <td>782번행</td> <td>61,082</td> </tr> <tr> <td>2546번행</td> <td>61,082</td> </tr> </tbody> </table>	구분	노무비단가	782번행	61,082	2546번행	61,082	건축	입찰공고 1.1 ②
구분	노무비단가									
782번행	61,082									
2546번행	61,082									
23	Q.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기계공사의 4511번행 합계단가에 합계금액이 입력되어 있는데?	A. 「안동~군위 및 영주~봉화 주배관 건설공사」의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기계공사의 4511번행 합계단가를 60,530원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30공종 분할내역서(통합본 및 분할본)의 합계단가가 상기 사례와 같이 단순 오류인 경우는 합계단가란에 재/노/경의 합한 단가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 /기계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4	Q. '토류판 제작 설치철거' 품은 잡철물 제작 품을 제외하고는 표준품셈 품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잡철물 제작' 품은 표준품셈 품을 적용하고 토류판 설치 철거의 적용된 장비(크레인 트럭 10톤) 및 인력 품을 현장여건을 토대로 분석하여 변경 가능한지?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적용한 장비라면 적용된 적산기준을 근거로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하나(단, 안전을 고려한 사용회수는 변경 불가),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1-가-1)-마)에 따라 '가설재 대체에 대한 절감사유'일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순번	질의사항	답변내용	구분	공구
25	Q. 터파기 적재장비인 B/H 0.4m ³ 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분석하여 품셈상 상위 장비인 B/H 0.6m ³ 로 변경 가능한지? 또한, 운반 장비인 DT 10.5ton에 대하여 주변도로 여건을 분석하여 품셈상 상위 장비인 DT 15ton으로 변경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A. '공지사항 및 질의 답변내용(2차)'의 1번에 따라 표준품셈이 아닌 다른 적산기준을 적용한 장비라면 적용된 적산기준을 근거로 현장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하나, 터파기 적재장비인 B/H 0.4m ³ 와 DT 10.5ton은 20" PIPE 매설을 위한 최적의 조합으로 당공사가 반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6	Q. 기계공사 '강관부설' 품은 기계 설비부분 중 장거리 배관공사의 표준품셈 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품을 토목부분의 강관부설 품을 적용하여 사유서를 작성할 경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A.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2-나4)에 따라 '유사 품을 적용한 경우'로 반영되어 부적합 처리를 받게 됩니다.	기계	6개 공사 (입찰공고 1.1)
27	Q. 세미실드공 사유서 작성시 현장시공 경험치를 이용하여 '기타 특별한 사유서'에 의한 평가가 가능한지?	A. 현장시공 경험치를 이용하여 절감사유서 작성은 가능하나, 당공사가 배부한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 가이드라인'의 절감사유의 불인정 처리기준 및 원가계산의 부적합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토목	6개 공사 (입찰공고 1.1)